

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71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7. 11. 16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「평생교육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가. 협의회 설치 및 기능 (안 제3조)

-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그 밖의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나. 협의회 구성 및 임기(안 제4조)

-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
-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 가능

다. 실무협의회 설치 등 (안 제7조)

- 평생학습기관간 프로그램 조정과 거점별 우수 프로그램 육성에 관한 협의·조정
- 평생학습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·조정
-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·조정
- 기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협의·조정
-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라.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기능(안 제9조)

-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
-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- 평생학습관련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
-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- 평생학습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
-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
- 기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마. 수강료 징수 등(안 제12조)

-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징수 가능

바.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등 지원(안 제13조)

-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지원 가능

사. 실비보상 등(안 제15조)

-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회원 및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 가능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 제9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7. 9. 18 ~ 10. 8(20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- 마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평생교육법」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생학습의 진흥)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,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·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 학습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2장 평생학습협의회

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관·단체간의 협력 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2.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·전문가·공무원이거나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③ 구청장은 학계, 시민단체, 기업체, 문화·예술 단체 등 분야별로 안배하여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.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 및 간사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는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③ 협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.

제7조(실무협의회 설치 등) ① 평생학습 시설·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평생학습기관간 프로그램 조정과 거점별 우수 프로그램 육성에 관한 사항
2. 평생학습기관의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
3.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기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은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소속 기관·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제8조(실무협의회 회의 등) ① 실무협의회의 위원 임기는 제4조제4항, 위원장의 직무는 제5조, 회의는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.

②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평생학습 담당 직원으로 한다.

제3장 평생학습센터

제9조(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센터(이하 “평생학습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으며, 평생학습센터는 구 관할 구역 안에 둔다.

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
2.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3. 평생학습관련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
4.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5. 평생학습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
6.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
7. 기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0조(구성 및 임기) ①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, 평생교육사,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. 다만,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학습 담당부서의 장이 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초·중·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자
2.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
3. 기타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1조(위탁운영)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(수강료 징수 등)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,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 사업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 의견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.

제4장 보칙

제13조(운영비 등 지원)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공동추진) 구청장은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, 유관기관,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5조(실비보상 등) 협의회나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, 관계 전문가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